

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7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6. 1. 08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상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며, 요금 납부방법 개선, 체납 시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 및 감면사항을 정함(안 별표 2, 별표 4)

- 업종별 사용료 20.9%, 구경별 기본요금 15.2% 인상률 반영
-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함(안 별표 7 신설)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지역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(1 ~ 3급)
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

나. 요금 등 납부방식 개선함(안 제32조의2)

- 요금,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에 관한 명문 신설

다. 요금 체납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함(안 제34조)

- (현행) 체납액의 3%, 월할계산 ⇒ (변경) 2%, 일할계산

라. 규제 삭제함

-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서 조항 삭제(안 제11조제1항제1호)
- 법령위임 없는 과태료 관련 조항 삭제(안 제45조, 별표 5)
 - 부정급수 제보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금액의 100분의 30 포상금 지급 조항 삭제(안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)
 -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준용 내용 삭제(안 제49조제1항 단서)
 - 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 조항에서 “과태료” 용어 삭제(안 제5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수도법」 제38조(공급규정)
- 「수도법」 제72조(수도요금 등의 납부)
- 「수도법」 제87조(과태료)
-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53조의2(수도요금 감면)
-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67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-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- 「표준급수조례」 제11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
- 「표준급수조례」 제29조(가산금 및 독촉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

나. 예산조치 : '16년도 예산 7,746천원 확보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(2) 규제심사 : 규제개선
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'15. 12. 10. ~ 12. 31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- (5) 성별영향분석 : 반영함(별지 제1호서식 성별 추가함)

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) 상수도사용자 등은 요금,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제34조 중 “100분의 3”을 “100분의 2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. (가산금 = 미납요금 × 2/100 × 12개월 × 연체일수/365)

제37조 제목 “(요금 등의 감면)”을 “(요금의 감면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⑤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,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

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.

⑥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.

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3조(포상금 지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: 1건당 20만원
2.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: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

제45조를 삭제한다.

제4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50조 중 “수수료, 과태료”를 “수수료”로 한다.

별표 5를 삭제하고, 별표 2와 별표 4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7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요금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“<u>공업용수</u>”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.</p> <p>10. ~ 11. (생략)</p> <p>제11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(다만,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)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<u>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 시설의 확장·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>제34조(가산금) 상수도사용자 등이 상수도 사용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<u>100분의 3</u>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 <후단 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10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<단서 삭제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2조의2(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) 상수도사용자 등은 요금,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</p> <p>제34조(가산금)----- ----- ----- -----100분의 2----- -----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. (가산금 = 미납요금 × 2/100 × 12개월 × 연체일수/365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p> <p>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사용자 :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감면</p> <p>2.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: 수도요금 100퍼센트 감면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37조(요금의 감면)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,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⑥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3조(포상금 지급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: 과태료 처분 금액의 100분의 30</p> <p>2.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: 1건당 20만원</p> <p>3.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: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</p> <p>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.</p>	<p>제43조(포상금 지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: 1건당 20만원</p> <p>2.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: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</p>
<p>제45조(과태료 등)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49조(이의신청) ① 상수도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.</p>	<p>제49조(이의신청) ①----- ----- ----- -----<단서 삭제>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0조(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) 이 조례에 따른 요금, 가산금, <u>수수료</u>, <u>과태료</u>,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</p>	<p>제50조(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) --- -----<u>수수료</u>----- -----</p>

[별표 2]

업종별 요금표(제27조 관련)

업종구분	사용단계별 (세제곱미터)	세제곱미터당 단 가(원)	현 행
가정용	1 ~ 20	700	530
	21 ~ 30	920	700
	31이상	1,210	920
일반용	1 ~ 30	800	665
	31 ~ 50	960	800
	51 ~ 100	1,120	930
	101 ~ 300	1,290	1,070
	301이상	1,450	1,200
산업용	1세제곱미터당	810	620

[별표 4]

구경별 기본요금(제27조 및 제33조 관련)

계량기 구경별 (밀리미터)	금 액 (원)	현 행
13	890	750
20	2,490	2,110
25	4,000	3,390
32	7,110	6,040
40	12,000	10,190
50	18,390	15,630
75	44,600	37,910
100	76,050	64,640
150	165,700	140,840

[별표 7]

상수도요금 감면율(제37조 관련)

감 면 대 상	감 면 율	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	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정	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(1급~3급)		
다.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	100퍼센트	
라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		
마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 사용자	50퍼센트	
바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	가정용	60퍼센트
	일반용	40퍼센트
	산업용	20퍼센트

주)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

※ 비고

1.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.
2.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. 다만,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신 규
 상수도요금 { 해 지 } 감면 신청서
 지하누수

신청인	주소	거창군 읍·면			
	성명 (대표자)		생년월일	(남/여)	
	전화번호				
수도 수전 현황	주소	거창군 읍·면			
	수용가 번호		업종	구경	
감면 대상 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	
	관계		신청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(1~3급)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」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: (인 또는 서명) (수도사용자와의 관계 :)</p> <p>거창군수 귀하</p>					
<p>※ 구비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면대상 :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, 장애인 증명서류 - 지하누수 :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, 누수공사 사진(전·중·후) <p>※ 유의사항 : 이사 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		

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선
-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,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

4. 작성자

상하수도사업소장 화 승 호